# 「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」

# 검토보고서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4. 12. 6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

# 「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# 1. 경 과

의안 제460호로 2024년 12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# 2. 제안이유

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 일대 목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제안된 '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(안),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(안),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'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 제2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제6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#### 가. 정비구역의 결정(안)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
16	1 10	77-1	기정	변경	변경후	비고
기정	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	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6 일대 (여의도동 30번지 일원)	11,570.0	_	11,570.0	_

#### 나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

#### 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(안)

	7 8		면적 ( <i>m²</i> )		구성비	ш
	구 분	기정	변경	변경후	(%)	비고
	합 계	11,570.0	-	11,570.0	100.0	
주거	제3종일반주거지역	11,570.0	감) 11,334.6	235.4	2.0	
지역	일반상업지역	0	증) 11,334.6	11,334.6	98.0	

#### ○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

구역명	용도지	19	면적(m³)	HI 건 AL C.		
TAR	기정	변경	인색(Ⅲ)	변경사유		
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	제3종 일반주거지역	일반상업	11,334.6	상위계획 및 주변 아파트 정비계획 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용도지역 상향하여 계획		

#### 다. 여의도 목화아파트 정비계획 결정(안)

#### 1)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

구 분	정비사업 당	녀치	위치		면적(m²)		비고
T &	01/1H 00		TIA	기정	변경	변경후	0177
기정	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		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 일대	11,570.0	-	11,570.0	
시행방법		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 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	비고
재건축정비사업 <sup>정</sup>		정비	비계획 결정 이후 4년이내	재건축 정비사업조합	증) 111세대 (현황 312세대, 계획 423세대)		

#### 2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

구 분	명칭	면적(m²)	비율(%)	비고
핞	계	11,570.0	100.0	
기미카미 기기 드	소계	235.4	2.0	
정비기반시설 등	도로	235.4	2.0	
획지	공동주택	11,334.6	98.0	

# 3)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) 교통시설

○ 도로 결정(변경)(안) 조서

구분	등급	규 럞	모 번호	폭원 (m)	기 능	연 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대로	3	31	25~ 45 (35)	주간선 도로	1,380 (80.5)	여의도남단	여의도북단	일반도로	건고143 (70.3.2 6)	1
변경	대로	3	31	25~ 45 (28)	주간선 도로	1,380 (80.5)	여의도남단	여의도북단	일반도로	건고143 (70.3.2 6)	완화 차선 확보
기정	중로	1	132	40~ 50	보조간선 도로	6,934	서울대교남단	서울대교남단	일반도로	건고143 (70.3.2 6)	

※ 연장 내 ( )는 구역 내 해당사항임

#### ○ 도로 결정(변경)(안) 조서

변경 전 도로명	변경 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대로 3-31	대로 3-31	• 도로 폭원(부분) 조정 (35m → 28m)	• 정비구역 내 35m 결정되었으나 실제 현황 25m도로로 사용중으로 실효성을 고려하여 28m 변경을 통해 구역내 완화차선확보

#### 4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#### 가) 부대복리시설 개요

구분	시설의 종류	위치		면적( <i>m</i> ²)		비고
十世	시끌의 등ㅠ	귀시	변경	변경후	법정기준	0177
	경로당	지상	증) 200	200	198이상	
	어린이집	지상	증) 200	200	198이상	
	작은도서관	지상	증) 120	120	108이상	
	주민공동시설-1	지상	증) 520	520	_	
	주민공동시설-2	지하	증) 2,100	2,100	_	
신설	주민공동시설-3	지상	_	_	-	
	주민운동시설	지상	증) 400	400	_	
	어린이놀이터	지상	증) 900	900	623이상	
	관리사무소	지상	증) 120	120	28.65이상	
	경비실	지상	증) 20	20	_	
	합계	_	증) 4,580	4,580		

※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,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(제28조, 제55조의2), 서울특별시 주택조례(제8조의4) 등 관련 법령 기준 적용

#### 나) 비주거시설 개요

구 분	구분 용도		면 적(m²)	비고
근린생활시설	그린생활시설 상업시설		10,221.44	
업무시설	오피스텔	영등포구 여의도동	6.101.59	지상부 비주거비율 10%
기부	공공시설 (공공업무시설)	30번지 일대	10,677.03	(10% 이상으로 완화 가능)
합 계			27,000.06	

※ 향후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 일반상업지역 내 비주거용도 비율 결정 예정

#### 5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

결정	구역 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정비개량계획(등)				비고	
구분	명칭	면적(m²)	명칭	면적(m²)	ᅱᄉ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주	미꼬
신설	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	11,570.0	획지1	11,334.6	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 일대	2	-	-	2	-	

### 6)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) 건축시설계획

구분	구역 -		가- 획		위치 주용도		견율	용적률	률(%)	높이	비
丁正	명칭	면적 ( <i>m²</i> )	명칭	면적 (m²)	TI 시		(%)	정비계획	상한	(m)	고
신설	목화아파트	11,570	획지	11,334.6	여의도동 30번지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	60 이하	230.0	600.0	200m (60층)	-

• 총 건립세대수 : 423세대(현황 312세대)

• 규모별 건설비율

- 전용면적  $60m^2$  이하 : 122세대(28.8%)

- 전용면적  $60m^2 \sim 85m^2$  이하 : 180세대 (42.6%)

- 전용면적 85m² 초과 : 121세대 (28.6%)
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

		구 분		세대수(세대)	비율(%)
		계		423	100.00
		소계		76	18.0
	임 대	60 m²이하	59m²형	61	14.4
		60~85m²이하	84m²형	15	3.6
공 동		소계		347	82.0
- O O O		60 m²이하	59m²형	61	14.4
十甲	분 양	60~85 m²이하	84m²형	165	39.0
	正る		103m²형	63	15.0
		85 m² 초과	124 m²형	34	8.0
			145 m²형	24	5.6

※ 상기면적은 계획면적이며 인허가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음

 $-85m^2$ 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: 71.39%

심의완화사항	<ul> <li>허용용적률 완화</li> <li>기준용적률 230% → 350%</li> <li>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준수 전제</li> </ul>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<ul> <li>건축한계선</li></ul>

#### 나)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

### 계획기준

- 공공주택(공공기여) 건설 : 국계법 제52조의2 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름
-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[별표3] 제2호에 따라 주거용 용적률은 400% 이하이며, 임 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경우 완화될 수 있다.
-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

구 분	주 요 내 용				
상한용적률	• 600.00% =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÷ 부지면적 = 67,994.24㎡ ÷ 11,344.6㎡				
정비계획용적률	<ul> <li>상한용적률: 600%</li> <li>정비계획 용적률: 600.27%</li> <li>[허용용적률+(허용용적률×(1.3×기중치×α) + (1 × α) + (0.7 × β1) + (0.7 × β2))]</li> <li>350%+(350%×1.3×0.6571×0.0282)+(350%×1×0.3580)+(350%×0.7×0.0861) + (350%×1× 0.1653)=600.27% ≥ 600%이하</li> </ul>				
	전용면적	세대수	연면적	비고	
재건축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	59.95㎡ (공급면적 83.85㎡)	61세대	$7.044.93m^2$	• 정비계획 용적률 완화(공공기여)에 따른 공공주택	
422114	84.95㎡ (공급면적 118.84㎡)	15세대	1,044.30#f	• 초과 연면적 : 7,027.45㎡ 이상	

#### 4. 추진경과

- '76.08.21.: 여의도아파트지구 고시
- '06.01.12.: 여의도아파트지구 변경결정 고시(서울시고시 제2006-21호)
- '21.01.26.: 재건축 안전진단 완료(E등급)
- '22.04.13.: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
- '22.09.29.: 조합설립인가
- '23.04.27.: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(주민→구)
- '23.04.27.: 신속통합기획 자문(안) 관련부서 사전협의(~5.10.)
- '23.08.30.: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(조치계획 반영) 신청(구→서울시)
- '23.08.31.: 정비계획 결정(변경) 주민제안(안) 접수
- '23.11.28.: 신속통합기획 1차 자문회의 개최(서울시)
- '24.10.28.: 정비계획 결정(변경) 주민제안(안) 변경 접수
- '24.10.31.: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람공고(~12.1.)
- '24.11.06.: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 관련부서 협의(~11.27.)
- '24.11.13.: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 주민설명회
- '24.11.19.: 신속통합기획 2차 자문회의 개최(서울시)

#### 5. 관련부서 협의 결과 및 주민 의견 청취

#### 가. 주민공람

- 1) 공 고 일: 2024.10.31.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-1855호)
- 2) 공고기간: 2024.10.31. ~ 12.01. (30일 이상)
- 3) 제출의견: 별도의견 없음

#### 나. 주민설명회

- 1) 개최일: 2024.11.13.(수) 14:00
- 2) 개최장소: 영등포구청 별관 5층 강당

#### 다. 관련부서(기관) 협의

- 1) 협의기간: 2024.11.6. ~ 11.27.
- 2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: 붙임1 참조

##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### □ 주요 관련부서 협의결과

- 협의부서: 서울시(11), 영등포구(6), 유관기관(4)
-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구 분		협 의 의 견	조치계획(결과)	비고
1	<b>공공기여시설</b> <b>관련</b> (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)	○기숙사는 지역필요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및 우리시 관련부서(공공 자산운용팀)와의 협의를 통해 적 정성을 면밀 검토하고, 금회 계 획(안) 유지시 '위치' 및 '구체적 관리·운영부서' 등 제시 필요 ○ 공공시설은 세분을 명확히 제시 하고, 서울시 공공자산운용팀과의 협의를 통해 '규모' 및 '구체적 관리·운영부서' 등 제시 필요	<ul> <li>○여의도 일대 행정·업무 종사자, 청년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숙사를 계 획하였으며, 관련부서(공공자산 운용팀)와 기협의하였으며, 구체 적인 계획(규모, 운영부서 등)을 제시하겠음</li> <li>○ 공공시설은 공공임대업무시설로서, 영등포구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관리운영계획을 계획 하였음</li> </ul>	반영
2	<b>건축계획</b> (서울시 도시관리과)	인접한 학교 및 아파트단지에 ° 학교 인접 구역은 중저층 배서울시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통해 부영향을 최소화 하였-		반영
3	도로계획 (서울시 도시관리과, 도시계획상임기획과, 영등포구 교통행정과, 도로과)	<ul><li>대상지 일대 교통현황 및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도로 확폭 계획 등 교통처리계 획의 적정성 검토 필요</li></ul>	<ul> <li>본 사업지와 장래 주변지역 개발계 획을 고려하여 여의동로 도로개선 방안(3차로(부분)→4차로)을 제시</li> </ul>	
		<ul><li>사업지 북측 여의나루역 삼거리에 횡단보도 신설 필요</li></ul>	<ul><li>사업지 북측 여의나루역 삼거리에 횡단보도 신설 검토하여 제시하겠음</li></ul>	
		<ul><li>사업지 진출입부 전면도로는 기존 차선 운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 각되므로 추가 1개차로 확보가 필요함</li></ul>	<ul><li>횡단보도 신설에 의한 신호현시 변경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설치 유무를 검토하여 제시하겠음</li></ul>	반영
		• 현재 진출입부 위치는 좌·우회 전이 모두 가능한 상황에서 여의 나루역 삼거리 교차로 진입차량 과의 상충으로 정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영차로의 용량증대를 위해 추가 1개차로 확보가 필요함	통을 원활하게 도모하였으며,	

#### 6. 검토의견

- O 본 의견청취의 건은
  - 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08.21.)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1호(2006.01.12.)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 -66호 (2024.02.01.)로 도시관리계획(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된 여의도 목화아파트에 대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건으로,
  - 대상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(여의도아파트지구 특별 계획구역1-1) 일대로, 제3종일반주거지역, 아파트지구(지구단위계 획구역), 도시계획도로로 1977년에 준공된 2개동, 312세대가 거주하는 12층 건물로 용적률 212%, 건폐율 21.5% 건축물임.
  -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(안)의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사항으로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 $11,570.0m^2$ 을 일반상업지역으로  $11,334.6m^2$ ,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 $235.4m^2$ 로 변경하여 여의도 아파트지구에서 제척하고.
  -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는 여의나루변 도로 확폭으로 대상지 내 3M 폭원을 조성하고, 여의동로와 여의나루로 교차점에 공개공지 조성 및 삼부아파트와 여의도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(폭8M) 조성 사항임.

- 공공시설계획으로는 건축물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업무시설 및 금융인 기숙사로 활용될 예정인 공공시설로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이며 용적률 56.90%로 운영주체는 영등포구임. 한편 임대주택(76세대)으로 활용될 예정인 지상 4층에서 지상 49층까지는 용적률 62.15%로 서울시가 운영주체임.
-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건축계획(안)으로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, 오피스텔, 근린생활시설, 공공기여시설을 용도로 건폐율 58.21%로 건축계획으로는 용적률 599.88%임. 또한 지상49층, 지하7층 규모로 공동주택은 423세대, 오피스텔은 36실로 구성되며 주차구획 면으로는 821대임.
- 주민공동시설계획으로는 경로당, 어린이집, 작은도서관, 주민공동시설, 주민운동시설, 어린이놀이터 등을 주택법 및 서울시 주택조례 등 기준을 충족하도록 계획하고 단지내부 저층부에 외부공간과 연계함.
-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남은 정비계획의 입안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,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·감독 해야 할 것임.